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130호)
- 나. 회부일자: 2023. 5. 2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8.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들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설치 개요
 - 설치연도 : 2001년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9조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건강 증진
 - ※ 재원조성 : 보조금, 과징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 인 원 : 30명
 - 사업내용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사업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용자

〈시설개선 용자 사업〉

- 용자규모 : 2억원
- 용자대상 :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
- 용자 및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이율 2%,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소요자금의 80%, 1억원 이하
 - 화장실개선자금 : 이율 1%,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소요자금의 80%, 2천만원 이하
 - 육성자금(모범음식전) : 이율 2%,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5천만원 이하

○ 기금변경 사유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사업비 잔액정산)
- 시설개선자금 용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

- 2022년도 기금 정산 내역

(단위 : 천원)

’ 21년도말 조성액㉔	’ 22년도 증감액			’ 22년도말 조성액 (㉔=㉔+㉔)
	계 ㉔=㉔-㉔	조성액㉔	사용액㉔	
920,816	△25,153	75,200	97,353	898,663

- 2023년도 기금변경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
기금 총 운용액	746,004	986,663	240,659

- 2023년 기정예산 746,004천원에서 986,663천원으로 증액 편성·당초 예치금 672,004천원에서 898,663천원으로 증액 편성

○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746,004	986,663	240,659	
보 조 금	11,000	25,000	14,000	시비보조금 편성
예치금회수	672,004	986,663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
이자수입	15,000	15,000	-	
기타수입	48,000	48,000	-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746,004	986,663	240,659	
보 조 금	11,000	25,000	14,000	시비보조금 편성
예치금회수	672,004	986,663		2022년도 결산에 따 른 예치금 회수 증가
이자수입	15,000	15,000	-	
기타수입	48,000	48,000	-	

○ 2022년도 기금 조성(안)

(단위 : 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3년말 조성액 (잔액)
986,663	341,921	644,742
보 조 금 25,000	비용자성사업비 132,820	· 2023년도 이월(예치금)
예치금회수 986,663	융자성사업비 200,000	
이자수입 15,000	기타지출 9,101	
기타수입 48,000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변경안 개요

- 본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3년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²⁾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같은 법 제89조제3항³⁾의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임.

-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3)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나. 주요내용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발생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2억 4,065만원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으로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2억 4,065만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재원을 예치금 재원으로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32.2%, 2억 4,065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 본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 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6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35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6. 23.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2022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3년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금설치 개요

가)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나) 설치목적 :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

다) 설치연도 : 1993년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나)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

나) 지원대상 : 성북구에서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 지원기준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 1.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담보-업체당 1억 원 이내, 신용-업체당 5천만 원 이내

4) 2023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 개요

가) 기금변경 사유

- 2022년도 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2022년도말 조성액)으로 예치금 증가
- 2022년 12월분 이차보전금 반영

나) 2023년도 기금변경 내역

- 2022년도 기금 정산 내역

(단위:천원)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라)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다)-(라)
전년도말 (가)	당해연도 (나)	계 (다)=(가)+(나)		
3,983,901	1,656,927	5,640,828	2,965,944	2,674,884

- 2023년도 기금 변경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
기금 총 운용액	3,297,833	3,783,641	485,808

- 2023년 기정예산 3,297,833천원에서 3,783,641천원으로 증액 편성

· 당초 예치금 295,083천원에서 780,620천원으로 증액 편성

· 2022년 12월분 이차보전금 271천원 반영하여 증액 편성

다)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297,833	3,783,641	485,808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1,045,756	1,045,756	-	
예치금 회수	2,189,077	2,674,885	(증) 485,808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
이자 수입	63,000	63,000	-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297,833	3,783,641	485,808	
비용자성 사업비	2,750	3,021	(증) 271	2022.12월분 이차보전금 반영
융자성 사업비	3,000,000	3,000,000	-	
예치금	295,083	780,620	(증) 485,537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라) 2023년도 기금 조성(안)

(단위: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3년말 조성액 (잔 액)
3,783,641	3,003,021	780,620
· 융자금 회수: 1,045,756 · 예치금 회수: 2,674,885 · 이자 수입: 63,000	· 비용자성 사업비: 3,021 · 융자성 사업비: 3,000,000	· 2024년도로 이월(예치금)

다.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4)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예치금 기정예산 2억9,508만원보다 4억8,553억원(164.54%) 증액된 7억8,062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

○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5)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자 및 소기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20.12.31.)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용자,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등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15.5.14.)

4. 기금의 운용·관리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개정 2015.5.14, 2020.12.31.)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6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36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6. 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2022년 기후변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금설치 개요

가) 설치연도 : 2013년

나)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6조

다) 설치목적 : 성북구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재원조성 : 성북나눔발전소 운용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라)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설치 지원사업

2)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개요

가) 운용계획 변경 사유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증 42,967천원)
 - 기타사업수입 증가(증 39,843천원)
 - 기금계좌 발생이자 증가(증 943천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집행잔액 발생(증 2,181천원)
- 2023년도 지출계획 증가(증 420천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예정에 따른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반영(증 420천원)

나) 2023년 운용계획 변경 내역

- 기금조성총괄 변경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도 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당초계획	109,866	55,450	63,140	△7,690	102,176
변경계획	152,833	55,450	63,560	△8,110	144,723
증감액	42,967	-	420	△420	42,547

○ 자금수지총괄 변경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당초계획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감	항목	당초계획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감
합계	165,316	208,283	42,967	합계	165,316	208,283	42,967
예치금회수	109,866	152,833	42,967	예치금	102,176	144,723	42,547
보조금	31,450	31,450	변동 없음	비용자성 사업비	63,140	63,560	420
이자수입	1,000	1,000		이 하 여 백			
기타수입	23,000	23,000					

- 2022년도 말 조성액 증가(증 42,967천원)로 인한 2023년도 예치금회수(수입) 증가(증 42,967천원)
- 2023년도 예치금(지출) 증가(증42,547천원) 및 비용자성사업비 증가(증 420천원)
- 비용자성사업비 증감액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⁶⁾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당초계획 지출액 1억6,531만원보다 25.99%인 4,296만원이 증액된 2억828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

- 성북구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6조7)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성북나눔발전소 운용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고효율에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6조(기후변화기금) ① 구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가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한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개정 2020.12.31.)

5.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본조신설 2013.9.26]

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등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에 따라 4,296만원의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여, 2023년도 기금을 기정예산 1억6,531만원에서 2억828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